

對北韓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研究*

... 나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

金相浩**

- I 序論
- II. 北韓의 開放推進과 紛爭解決에 관한 法制
 - 1. 對外開放을 위한 機構의 改編과 法令制定
 - 2. 投資關聯 紛爭의 解決
 - 3. 內容分析
- III. 나진·선봉지대 投資紛爭과 仲裁制度
 - 1. 投資紛爭의 內容
 - 2. 北韓의 仲裁制度
 - 3. 第3國 仲裁 및 適用規則
- IV. 나진·선봉지대 投資紛爭과 南北韓 仲裁協力
 - 1. 紛爭解決의 基本方向
 - 2. 紛爭解決의 課題
- V. 結論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경영학박사.

I. 序 論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청진·나진·선봉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 지정은 1991년 12월 28일 북한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행해졌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나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합영, 합작, 외국인단독기업을 허용한다. ③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북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⑤ 개발지대 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⑥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들을 취한다 등이다.

현재 북한은 199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UNDP가 북한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연길을 잇는 대삼각지역개발을 선호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을 잇는 소삼각지역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이 소삼각지역에서 나진·선봉지대를 북한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지역으로 함과 동시에 앞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동북아의 중계형 수출가공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진·선봉지대는 중국의 경제특구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동 지대내에서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 지역에서 투자유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북한내 자유경제무역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진·선봉지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우리나라 및 외국의 투자가 촉진되면 그에 따른 투자분쟁도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분쟁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관행이다. 또한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이나 세계은행 주도하에 탄생된 다국간 조약들도 있고 2국간 쌍모조약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들

- 다국간 조약에 가입하거나 쌍무조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나진·선봉지대를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진 한국과 외국의 기업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면 투자분쟁의 합리적·신속한 해결은 현안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투자관련 분쟁에 관한 법제를 고찰하고 중재제도에 의한 나진·선봉지대 투자분쟁의 해결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남북한 중재 협력의 과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北韓의 開放推進과 紛爭解決에 관한 法制

1. 對外開放을 위한 機構의 改編과 法令制定

북한은 1994년 12월부터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 경제활동 업무를 반관반민단체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양대 기관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은 모두 정무원 기구인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유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 조총련과의 합영·합작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북한 대외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을 시발로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기존의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3년 1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세관법, 토지임대법 등의 제정과 세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은 이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¹⁾을 모법으로 두고 그 하위체계로 이른바 투자 3법인 합영법²⁾, 합작법³⁾ 및 외국인기업법⁴⁾이 중심 법

률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투자 3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에 속하는 자유경제 무역지대법¹⁾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 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이다.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내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외국투자은행법²⁾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를 포함한 북한지역내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한이 외국은행 유치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외화조달과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95년 2월 대외경제계약법³⁾을 제정·공포하였다. 1985년 제정된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본따 만든 듯한 이 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북한도 이제는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사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틀격을 갖추게 되었다.⁴⁾

2. 投資關聯 紛爭의 解決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

- 1)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 2) 1984.9.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제정 및 1994.1.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
- 3)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 4)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 5) 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
- 6) 1993.11.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제정
- 7) 1995.2.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
- 8)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법무』, 1995.8, pp.12~13

결하도록 노력하며 실패시에는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최종 해결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 투자법령상의 분쟁해결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법(제22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협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② 합영법 및 동법 시행세칙

- 합영법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 합영법시행세칙 제9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 합영법시행세칙 제99조: 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심의해결받으려 한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한다.

- 합영법시행세칙 제101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 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합영법시행세칙 제102조: 합영당사자들은 협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합작법(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④ 외국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정

- 외국인기업법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⑥ 대외경제계약법(제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3. 내용分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상의 분쟁해결조항 중 강조되고 있는 것은 중재전 단계로서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는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최종해결을 위한 중재신청에 앞서 협의를 통한 해결노력이 선행될 것인바 이는 당사자간 투자활동의 지속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분쟁해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방법”이란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노력은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한의 중재기관이 개입하여 알선이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재전 상사분쟁 해결수단의 하나인 클레임 알선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알선제도는 중재법규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중재와는 별개로 중재전 단계에서 시도되는데 분쟁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클레임 알선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된다.⁹⁾ 중재전 단계에서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는 국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방정책 실시 이후 서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 등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¹⁰⁾

9) 중재원이 행하는 클레임 알선의 근거법은 중재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다

10) 1979년에 체결된 미·중국 무역협정 제8조와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 무역협정 제8조에는 중재전 단계의 분쟁해결 노력으로 당사자간의 우의적 협상이나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분쟁해결조항에서 예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의 경우 제도적 혹은 기관중재(institutional or permanent arbitration)를 강조한 것이다. 제3국 중재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법에서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으로 표현하거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고 표현한 것도 제도적 중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중재를 부탁할 특정의 중재기관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중재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합의하지 않고 분쟁 발생후 그때마다 중재인이나 준거법 등을 개별적·임시적으로 결정하여 중재를 진행시킨다면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가 된다.¹¹⁾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무역협정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¹²⁾ 북한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안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재기구는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직형태이다.¹³⁾

북한은 분쟁발생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대북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중재절차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외에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북한인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까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서방국가와도 중재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합영법과 동법 시행세칙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¹⁴⁾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

11) 한국 중재법에서는 양 중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재법하에서 제도적 중재와 임시적 중재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뉴욕협약에서도 양 중재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

12)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3항

13) 양병희,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 12, p.135.

14)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 단독출자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북한내 해당기업 내지는 북한 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 2월에 제정·공포된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투자관련법령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력,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투자관련법령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열거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상사중재의 국제성을 인정하는 고무적인 조치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의 기업과 체결된 경제계약에 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의 예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국제경제계약법으로 하지 않고 대외경제계약법으로 하고 법률의 내용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¹⁶⁾

III. 나진·선봉지대 投資紛爭과 仲裁制度

1. 投資紛爭의 内容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관리·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에서는 투자분쟁을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

15)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11. p 135.

16) 법원행정처, 상계서, p 136

다. 여기서 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은 물론 합작 기업과 합영 기업을 포함한다.¹⁷⁾ 지대 내에서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조달에 관하여는 토지와 노동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 기관의 승인 아래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또한 지대 내의 외국 투자 기업은 원료·자재와 부문 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북한의 기업 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 가공은 지대 안에서 수행한 생산 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¹⁹⁾ 이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대 밖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에 대하여서도 관세·기업 소득세 등 이 법에 규정된 제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지대에 위치한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대 밖에 위치한 북한 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 투자 기업과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지대 안의 경제 무역 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²⁰⁾

지대는 상품의 가공 및 중개 무역 기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품은 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보관·가공·조립·분해·선별·포장·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나갈 수 있다.²¹⁾ 지대 내에서의 상품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격 결정 원리를 배제하여 자유 경제 무역 지대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²²⁾ 그러나 일부 대중 필수 품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대 내에 있는 무역 항에는 무역 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²³⁾ 이는 지대 내의 나진항 등을 자유 무역 항으로 지정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17)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도 국가의 승인을 얻어 외국 투자자와 합영·합작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18조).

18)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20조

19)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24조.

20)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19조. 따라서 “경제 무역 활동”的 개념 속에는 무역 업무 외에 일반적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21)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17조. 그러나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 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2)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22조

23) 자유 경제 무역 지대법 제23조

있는 것으로 여기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항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당사자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투자당사자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체들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³⁾

외국인투자내상은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⁵⁾ 자원개발과 같은 양허사업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남북부속합의서에서는 “자원의 공동개발”도 경제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²⁶⁾ 외국인투자법이나 합영법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투자금지대상으로는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하였다. 합작법에서는 투자금지대상을 규정하지 않았고 합영기업에 대하여는 합영법시행세칙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법은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²⁷⁾ 이에 반해 투자장려대상으로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장려조치로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과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외국인투자의 투자목적물은 화폐·현물·산업재산권·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며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²⁹⁾

24) 외국인투자법 제5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개념속에 남한 주민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중국에서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1994. 7, p 26 참조)

25) 외국인투자법 제6조

26)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27) 외국인투자법 제11조, 합영법시행세칙 제5조 및 외국인기업법 제3조

28) 외국인투자법 제7조~제8조.

29) 외국인투자법 제12조

나진·선봉지대내의 투자(investment)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투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투자의 정의는 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와 관련되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은 없다. 앞으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북한과 투자국으로서의 외국간에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를 예시하는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라 함은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투자당시의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국가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로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 ① 동산,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과 같은 모든 물권적 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제권리
- ② 지분·주식·채권·회사의 사채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회사·기업 또는 합작사업에의 참여권
- ③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 ④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영업권
- ⑤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 법률에 따른 각종 면허 및 허가

2. 北韓의 仲裁制度

북한은 1992년 11월 대외경제기구를 개편하여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부 및 대외경제사업부를 대외경제위원회에 통폐합하여 동 위원회가 대외경제관계를 총괄하고 있다. 대외경제위원회의 산하에는 무역관계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경제협력 및 나

30) 한·중투자보장협정 제2조 (가) 동 조항에서는 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추진창구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다.

나진·선봉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상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동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단순히 "중재"라고 하면 국가중재재판제도와 국제무역중재 제도라고 하는 상이한 성격의 두 가지 분쟁해결제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중재기관"이 국가중재기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직속된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문면상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위시하여 외국인투자법령을 제정한 목적이 남한 및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있으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나진·선봉지대 내의 외국인투자관련 분쟁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해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에 관한 법규정으로는 1956. 11. 24.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 함)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속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이하 "사건처리규정"이라 함)과 1989. 1. 4.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서 채택된 "중재심문규칙"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또는 사건처리규정의 채택 후에 중재심문규칙이 제정되었고, 또 중재심문규칙의 내용상 위 각 규정과 다른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하나 1993년에 발간된 일조(日朝)무역회의 경제관련법령집에 유효한 법령으로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제정된 위 각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³¹⁾

북한에서 국제무역중재제도는 외국과의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남한 또는 외국 기업 등과의 무역·서비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도 해결하는 역할

31) 법원행정처 전재서, pp 137~138

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절차를 규율하는 제반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체로 상대국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홍콩, 구동독, 불가리아 등 제3국의 무역중재기관에서의 분쟁 해결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²⁾

중재심문규칙 제1조에서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한의 무역기관 또는 다른 경제조직과 다른 나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국민간의 상품매매계약과 대리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심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한과 외국의 무역분쟁의 심리해결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한의 유일한 상설적 국제무역중재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반관반민단체적 성격을 지닌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직속기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평양에 소재하고 사건의 처리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나 당사자 쌍방이 원하거나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는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³³⁾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국제법, 경제 및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1년의 임기로 임명하는 11~15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재원 중에서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된다.³⁴⁾ 중재원의 국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북한이 인정하는 북한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第3國 仲裁 및 適用規則

(1) 關係規定 및 受諾可能한 第3國 仲裁機關

북한은 분쟁발생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

32) 법원행정처, 상계서, pp.138~139

33) 법원행정처, 상계서, p.140.

34)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재심문규칙 제7조, 제9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원”을 “중재인”(Arbitrator)으로 호칭한다. 또한 중재인이 3인인 경우 의장중재인 1인과 중재인 2인으로 중재판장부가 구성된다

국 등 대북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절차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외에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북한인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까지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 등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방국가와도 중재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협영법과 동법 시행세칙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³⁵⁾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제3국 중재의 경우 북한당사자와 외국투자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과 과거부터 중재관계를 가진 독일의 베를린중재재판소(Schiedsgericht Berlin)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진·선봉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베를린중재재판소가 바람직할 것인가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거리가 멀다는 것과 함께 중재비용의 증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CIETAC는 상해 및 홍콩에 인접한 심천경제특구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어 나진·선봉 투자분쟁의 해결기관으로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제3국 중재기관을 고려함에 있어 말레이지아의 콜라룸푸르에 있는 AALCC중재센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AALCC는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로서 법률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정부의 자문과 법률분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35)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6) AALCC는 The Asian ·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아·아법률자문위원회)의 약칭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56년에 창설되었다. AALCC는 당초 인도 등 제3세계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후 남북한 및 중국이 가입하여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명실상부한 국제적 협력기관이 되고 있다.³⁷⁾

제3국 중재의 경우 남북한 당사자 및 북한과 외국당사자가 수락가능한 국제적 중재규칙으로는 UNCITRAL중재규칙과 위싱턴협약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2) UNCITRAL仲裁規則

나진·선봉지대 내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가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이루어 질 경우 바람직한 국제적 중재규칙은 무었인가?

북한이 현재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란 점을 고려할 때 UNCITRAL중재규칙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UNCITRAL중재규칙은 지금까지 동서국가간 무역 내지 투자분쟁 해결에 이용되어 온 가장 보편화된 중재규칙이다. 동규칙은 1976년 UNCITRAL(UN국제무역법위원회)이 제정하였는데 4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UNCITRAL중재규칙은 원래 임시적 중재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으나 기관중재를 배타적 관계로 보지 않으며 그 기능의 다양화에 적합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적 중재는 물론 기관중재에도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UNCITRAL중재규칙이 최초로 언급된 중재협정은 “미·소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으로 알려져 있다.³⁸⁾ 또한 1984년 미국중재협회와 형가리상업회의소 간에 체결된 같은 명칭의 중재협정에서도 중재절차에 관하여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한·러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에서도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

37)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AALCC 산하의 팔라룸푸르중재센터 및 카이로중재센터와 중재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38) 1977년에 체결된 이 중재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이다

39) 러시아는 소련붕괴 이후인 1992년 과거 소련이 소유하였던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소련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이 포함된다.

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UNCITRAL중재규칙은 동서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분쟁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UNCITRAL중재규칙은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해 UN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동 규칙의 초안 작업시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모스크바협약과 같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UNCITRAL중재규칙은 현존하는 국제적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는데 ECAFE규칙과 ECE규칙이나 ICC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중재규칙, 소련상공회의소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다.⁴⁰⁾

(3) 워싱턴協約

북한의 대외개방의 상징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남한 및 외국의 지속적 자본투자는 북한의 대외개방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거래가 국영이나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우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북한과 자본투자자로서의 외국인(개인, 기업 등)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공정한 해결보장이란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북한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가지게 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의 한계성으로 중재절차 진행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진·선봉지대 내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워싱턴협약에 의한 중재절차 진행이 고려되는 것이다.⁴¹⁾

워싱턴협약⁴²⁾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로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10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중재는 한 국가의 법을 준거하고 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국

40) Pe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ICCA Yearbook Vol II (1977), pp. 73~174.

41)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북한투자에 관심을 가진 이들 국가들은 모두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미가입 상태다.

42) 정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이다

가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혀 독립된 별개의 중재에 관한 준거법을 제정한 것이 위싱턴 협약이다.⁴³⁾

ICSID의 절차는 UNCITRAL중재규칙의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⁴⁴⁾ ICSID중재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무역계약 이외에도 기술이전 및 협작기업의 책임 등과 관련된 대단히 복잡한 분쟁해결에 적합하다.

위싱턴협약에서는 체약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배척하고 있다.⁴⁵⁾ ICSID의 중재가 외국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일단 중재에 합의한 이상 관할권에 대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부의 주관하에 중재가 분쟁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중재에 동의한 이상 체약국은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⁴⁶⁾ 또한 모든 체약국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자국의 종국판결과 다름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⁴⁷⁾

IV. 나진·선봉지대 投資紛爭과 南北韓 仲裁協力

1. 紛爭解決의 基本方向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목적은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대북 투자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QHF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에는 기본적 거래질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법적장치의 마련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43) 김성호 외,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7 2, p 64.

44) William F. Fox,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 Devente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8, p.255

45) 위싱턴협약 제27조 제1항.

46) 위싱턴협약 제26조

47) 위싱턴협약 제54조 제1항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단계별 진전 즉, 남북간 물품교역에서 대북투자, 합작투자 또는 자원의 공동개발단계를 거쳐 남북한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경우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고려에 넣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관행이 중재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교역 및 투자규모가 큰 남한측이 중재의 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 점은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남북한 분쟁해결의 실천적 과제로는 교역 및 투자보장에 관한 정부차원의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중재기관간에 공동중재규칙의 제정 및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제3국을 통한 분쟁해결문제들을 들 수 있다.

2. 紛爭解決의 課題

(1) 紛爭解決을 위한 政府次元의 協定締結

남북한간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과제는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이나 교역협정을 체결하여 확실한 분쟁해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⁴⁸⁾ 아니면 남북한간 정부차원의 (가칭) "남북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한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⁴⁹⁾ 분쟁해결조항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 및 러시아와 체결한 무역 및 투자보장협정상의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8) 법원행정처, 『전개서』, p.157

49)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발효) 제1조 제12항.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파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및 대외경제계약법상의 분쟁해결조항을 검토해보면 러시아보다는 중국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 메커니즘⁵⁰⁾을 보면, ①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하며, ②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③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④한국과 중국 양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협정에도 이를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수락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중투자보장협정에서는 중국이 위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중국이 ICSID에 대한 유보통고를 통하여 ICSID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은 위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ICSID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위싱턴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란 점과 그러나 UN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ICSID중재보다는 UNCITRAL중재규칙을 더 선호할 가능성 이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과 함께 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⁵¹⁾과 위싱턴협약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 南北共同仲裁規則의 制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상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한·중무역협정 제6조 참조.

51) 정식 명칭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일명 뉴욕협약)이다. 자연인 및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국제연합 주도로 1958년 6월 10일 채택된 중재에 관한 세계 최대의 다국간 조약이다. 한국은 1973년 가입하였으며 1997년 3월 현재 112개국이 가입하고 있는데 동서·선후진국을 냉라하여 주요 교역국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유추해석해 볼 때 북한은 임시중재보다는 제도적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간 공동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남북한간 분쟁을 제도적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이 요청된다.

공동중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별도의 공동중재기구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축적된 중재처리 경험이나 국제적 인지도와 중재협력관계 상관행 등을 고려할 때 별도 기구의 신설보다는 남북한의 기존 중재기구가 공동으로 남북 공동중재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될 때 중재기구로는 남한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되며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공동규칙 제정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공동중재규칙의 제정목적은 남북한 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써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에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적용대상으로는 남북한 물품의 반출입, 용역,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포함하여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분쟁발생시 중재지 및 중재기관의 결정은 규칙상에 (가칭) “남북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기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문진행, 중재판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은 UNCITRAL중재규칙 등 국제적 중재규칙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南北 仲裁機關間 仲裁協定의 締結

무역이나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국제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재지⁵³⁾에 관한 합의이다.

중재지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문에의 출석,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

52) 합동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미국중재협회와 체결한 한·미 중재협정상의 합동중재위원회 운영경험 및 과거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중재기관간에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둔 합동중재위원회의 운영기법과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3)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지 내에서 심문절차가 행해지는 특정장소(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 등)는 이를 심문장소(place of hearing)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지와 심문장소를 모두 중재장소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순조롭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지를 사전에 확정시켜 두는 대신 양 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상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재지를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협정상의 중재조항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중재협정은 중재기관간의 중재협력에 관한 협정이므로 남북한의 경우 체결의 당사자는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설중재위원회가 될 것이다.⁵⁴⁾

대한상사중재원이 그간 중국,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권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은 중재지 결정에 있어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해 있다.⁵⁵⁾ 따라서 남북한 중재협정에서도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한 중재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 중재협정의 경우는 피신청인이라는 지위에 따라 중재자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중재협정⁵⁶⁾에 약간의 보완을 가한 협정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피신청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물품의 상태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예외적으로 중재지를 신청인국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고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된다.⁵⁷⁾ 왜냐하면 남북한 당사자간에 상사분쟁 발생시 교역, 투자를 포함한 대북 경협에서 남한측 당사자가 중재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재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V. 結論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나진·선봉지대를 중국

-
- 54) 별도의 중재기구 설립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양국간 기존 중재기관간의 협정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55) 피신청인주의란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56)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 러시아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권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중재협정이 모두 이에 속한다
 - 57) 대한상사중재원이 1973년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와 체결한 중재협정의 내용이 이에 속한다

의 경제특구처럼 개발키 위해 제정된 법으로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진 한국과 외국의 기업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동법에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제도와 우대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고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대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에 더 비중을 둘만하다.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유치 및 개발이 성공하면 향후 남포, 신의주 등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대는 또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위해 한국 등 서방국가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지대의 개발성공은 북한의 고립화 탈피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진·선봉지대 내의 한국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분쟁의 신속·합리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UN회원국으로서 UN주도하에 탄생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또한 세계은행 주도로 탄생된 위싱턴협약에 가입하여 ICSID중재에 의한 투자분쟁의 해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현안의 과제이다.

분쟁사건의 회부에서 북한은 서방투자자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 북한내 중재기관에 의한 투자분쟁해결에 집착하지 말고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 제3국 중재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실행이 중재실무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투자분쟁에서 개방적인 분쟁해결을 장려하는 것은 나진·선봉지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한의 대북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상사분쟁의 신속·합리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이 뉴욕협약이나 위싱턴협약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 정부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집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을 실무적 차원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한 중재기관간에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당사자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상호 외,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7. 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북 교역·투자 설명회,” 1995. 12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 해결 안내,” 1995.
- 동남은행 지역개발연구실, “북한의 최근 경제동향과 남북경제교류의 전망,” 1995. 1.
- 문준조, “중국투자의 법적 제문제,” 행법사, 1991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11.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법규집(1), 1993.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법규집(2), 1994.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일본어판)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Golden Triangle, Project for Investment,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1993.
-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법무, 1995. 8.
- 양병희,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 12
- 외무부 국제경제국, “한국·러시아간 체결 협정집,” 1994. 11.
-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IV),” 1995. 12.
- 통일원, “남북교역 실무안내,” 1995. 12
- 통일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현황 평가 및 개발전략 모색,” 1997. 7. 18.
- 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제 이해,” 1995. 12.
- 통일원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1995. 12
- 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1996. 2.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합영법제,” 1992. 10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1994. 7.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최근의 법제발전,” 1995. 12.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1996. 5.
- 한국무역협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법규집,” 1995. 2.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및 투자 실태조사,” 1996. 2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26권 제1호),” 1993. 7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26권 제2호),” 1993. 12.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27권 제1호),” 1994. 7.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27권 제2호),” 1994. 12.
- 中國 吉林人民出版社, 東北亞經濟開發戰略研究--國際學術討論會文集, 中國 長春
1993. 1.
- 中國 吉林大學出版社,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 中國 長春 1994. 2.